

순천대학교 도서관 규정

제정 1982. 3. 1.	개정 1986. 11. 27.
개정 1990. 5. 21.	개정 1992. 7. 18.
개정 1994. 7. 1.	개정 1999. 4. 17.
전문개정 2001. 9. 1.	개정 2003. 2. 28.
전문개정 2004. 5. 24.	개정 2007. 8. 24.
전부개정 2016.12. 2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순천대학교 학칙에 따라 순천대학교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① 도서관은 도서관 업무를 총괄하는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도서관은 학칙에 따라 학술정보과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제3조(직무) ① 도서관은 대학의 교육과 연구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학의 교육 및 연구에 필요한 도서관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서비스 제공
2. 교육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지원
3. 학생들의 학습 및 수업 활동에 필요한 지원
4. 대학에서 생산한 각종 지식자원의 수집, 디지털화 및 운영
5. 다른 도서관 및 관련 기관과의 상호협력과 서비스 제공
6. 그 밖의 대학도서관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② 도서관은 제1항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사회의 관련단체와 개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4조(직원의 배치 및 교육) ① 대학도서관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 수, 장서 수를 고려하여 대학의 교육과 연구 지원을 위한 사서 및 전문 직원을 10명 이상 확보·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